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관련근거

- 「주택법」 제57조 제7항

□ 주택건설사업 개요

- 사업명 : 울산 울동공공주택지구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울동지구 한신더휴 B2블록)
- 사업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울동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 사업주체 : 울동피에프브이(주) 외 1
- 시공사 : 한신공영
- 대지면적(m²) : 22,452.00m²
- 연면적(m²) : 72,439.9999m²
- 아파트 동수 : 5개동
- 지하층/지상층 : 지하2층 / 지상20층
- 세대수 : 436세대
- 입주자모집승인권자 : 울산북구청
- 가산비 공시 주체 : 울동피에프브이(주) 외 1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산비 공시

항 목		금액
택지 가산비	합계	17,903백만원
	기간이자	453백만원
	제세공과금	1,610백만원
	말뚝박기공사비	8,068백만원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7,512백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59백만원
건축 가산비	합계	12,585백만원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518백만원
	인텔리전트설비 가산비	6,158백만원
	공동주택성능등급	1,658백만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공사	1,239백만원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457백만원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1,113백만원
	분양보증수수료	442백만원

※ (주의 문구) 주택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시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 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